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89
------------	------

2019. 11. 2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19. 10. 16.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2019. 10. 22. 회부)

2.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중앙주거복지센터 및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주거관련상담·정보제공·사례관리 등 각종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나. 위탁기간 만료('19.12.31)에 따라 주거복지서비스에 관한 전문성과 사업 추진 역량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다. 지역주거복지센터 25개소 중 10개소는 최초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주거복지센터 운영
- 나. 위탁현황(동의대상)

연번	센터명	수탁기관명	(재)위탁일
1	성동주거복지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18.01.01.
2	성북주거복지센터	(사)나눔과미래	'18.01.01.
3	강북주거복지센터	(사)강북주거복지센터	'18.01.01.
4	노원주거복지센터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18.01.01.
5	은평주거복지센터	(사)마을과사람	'18.01.01.
6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사)희망마을	'18.01.01.
7	금천주거복지센터	(사)한국주거복지협회	'18.01.01.
8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18.01.01.
9	관악주거복지센터	(사)관악주민연대	'18.01.01.
10	송파주거복지센터	(사)위례	'18.01.01.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재계약 필요성

○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
-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19조(센터의 설치), 제21조(관리 및 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19.8.30)

○ 재계약 필요성

- '18년 25개 자치구로 확대된 지역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사업 추진역량을 갖췄으며, 현재 구축되어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축적된 정보와 경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 및 전달체계의 강점 유지 필요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연번	센터명	소재지	규모
1	성동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53, 다남매타워 1204호	77㎡
2	성북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60, 길음역환승주차장빌딩 705호	168.96㎡
3	강북주거복지센터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35길 34	54.44㎡
4	노원주거복지센터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 23길 17, 원터행복발전소 3층	17㎡
5	은평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506B	21㎡
6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가좌로 77, 201호	49㎡
7	금천주거복지센터	서울시 금천구 두산로 70(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B동 1311-2호	55㎡
8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602호	224.79㎡
9	관악주거복지센터	서울시 관악구 중앙2길 16, 2층	35㎡
10	송파주거복지센터	서울시 송파구 성내천로 216, 2층	73.5㎡

마. 위탁사무 내용 : 「서울시 주거기본조례」 제20조 및 협약서에 따른 사무

- 주거 관련 조사지원
- 주거복지사업의 정보제공,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상담 및 사례관리
-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제공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 주거취약계층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
- 지역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주거 취약계층의 실태조사
-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위탁기간 : '20.1.1 ~ '21.12.31.(2년)

사. 위탁방식 : 사무위탁 재계약

아. 위탁비용 : 1,448백만원('20년도 예산안)

- 산출내역 144,809천원 × 10개소 = 1,448,090천원
- 센터당 인건비 = 112,809천원 (3명)/ 운영비 = 5,000천원/ 사업비 = 27,000천원

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차.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격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제22조

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19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앙주거복지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와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년부터 회계 변경

-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 주택사업특별회계

5.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 상담, 정보제공 등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3년 12월부터 운영 중인 10개 주거복지센터에 대하여 최초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하여 재계약¹⁾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

1)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하며, 반면에 기존 수탁기관이 아닌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조의32)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10월 2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주거복지센터의 민간위탁은 「주거기본법」 과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것으로,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사업 촉진을 위해 센터를 둘 수 있으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 설치 및 운영을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³⁾.
-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3년 12월에 최초 10개소의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이하 '지역센터')를 사무형⁴⁾으로 민간위탁을 결정하였고, 지역센터 확충계획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추가 15개소 지역센터의 민간위탁을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6월 중앙주거복지센터(이하 '중앙센터')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민간위탁 하였음. (붙임2 참조)
- 민간위탁의 동의 및 재계약에 앞서 금년 8월에 25개 지역센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평가는 센터별 자체평가와 전문가 현장평가 등 2단계에 거쳐 실시하였음. (평가 개요 및 방법은 붙임3 참조) 그 결과 25

은 “재위탁”으로 정의됨(「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및 제5호)

- 2)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21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4) 예산지원형 민간위탁은 크게 ‘시설형’과 ‘사무형’으로 구분되며, ‘사무형’ 위탁은 서울시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수탁기관의 자기소유 또는 수탁기관 명의로 임차한 시설을 활용하여 그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개소 모두 재계약 요건인 기준점수를 상회⁵⁾한 것으로 평가되어, 서울시는 시의회 동의를 구한 후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임.

- 한편, 금번 동의 대상인 10개소 지역센터에 대한 2020년 민간위탁금 편성예산은 14억 4천 8백만원⁶⁾으로, 각 센터별로 직원 3명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위해 1억 4천 5백만원씩 편성하였음.
- 종합하면,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수준 향상 및 주거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복지센터의 지속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민간 등의 전문성과 조직·인력, 축적된 경험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사료됨⁷⁾. 특히 동의를 받고자 하는 10개 지역센터의 경우 최초 신설 이후 6년 간 운영해 온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위탁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재계약 후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금년도 평가 결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 평가 결과에 따른 주요 의견은, 센터별로 주거빈곤층 유형에 대한 이해, 상담 기록방법 등이 상이하어 지역센터별 업무역량과 능률에 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공동업무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필요하다는 부분과, 종사자의 자격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등이 있었음. 이에 센터 운영 사례회 등 다양한 공유방안 마련, 전문적 교

5) 평가 점수의 만점은 가점 6점을 포함한 106점이며, 60점에 미달될 경우 재계약 및 재위탁 여부에 반영토록 하고 있음. 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92.5점이고, 전문가 평가의 최고점은 105.3점, 최하점은 63.9점임.

6) 2020년 10개소 지역주거복지센터 예산 : 1,448,090천원 = 144,809천원* × 10개소
* 센터당 인건비 = 112,809천원 (3명), 운영비 = 5,000천원, 사업비 = 27,000천원

7) 2019년 제7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19.9.6) 결과, 지역센터 25개소 모두 현재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정하다'는 결과를 받았음.

육 프로그램 도입과 같은 방안을 모색하여 센터 업무 수행을 내실있게 하도록 지원·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또한, 평가 결과에 따른 의견 중 일부 센터는 일반인들이 찾기 어려운 위치에 있거나, 외부에서 주거복지센터라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현재 주거복지센터는 사무형 위탁으로서 시설의 입지와 공간 확보는 수탁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한 시설을 활용하고 있어, 일부 센터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센터에 대한 주거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센터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함.

담 당 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윤 은 정
연 락 처	02-2180-8208
이 메 일	urbanth@seoul.go.kr

【붙임 1】 관련 법규정

○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19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앙주거복지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와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4., 2019. 9. 26.〉

제20조(주거복지센터의 기능)

① 중앙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정보 제공·상담 및 사례 관리를 위한 주거복지 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관련 정책개발
4.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
5. 주거복지 홍보 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7. 지역센터의 사업 및 운영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정보제공,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상담 및 사례관리
3.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제공
4.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5. 주거취약계층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
6. 지역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8. 지역 주거 취약계층의 실태조사
9.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관리 및 운영)

- ①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4., 2016. 7. 14., 2019. 9. 26.〉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 ③ 중앙센터는 지역센터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4., 2019. 9. 26.〉
- ④ 제1항 중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기준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4., 2019. 9. 26.〉
- ⑤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7., 2016. 3. 24.〉
-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4., 2019. 9. 26.〉
- ⑦ 시장은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7., 2016. 3. 24., 2019. 9. 26.〉
- ⑧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4.〉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0., 2012. 12. 31., 2014. 5. 14.>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삭제 <2014. 5. 14.>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28.>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3. 28.>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 3. 28.>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붙임 2】 주거복지센터 현황

○ 3회 재계약

연번	센터명	사업지역	수탁기관명	그간 위탁기간
1	성북	성북구	(사)나눔과미래	'14.1.1~'19.12.31
2	강북	강북구	(사)강북주거복지센터	'14.1.1~'19.12.31
3	노원	노원구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14.1.1~'19.12.31
4	은평	은평구	(사)마을과사람	'14.1.1~'19.12.31
5	서대문	서대문구	(사)희망마을	'14.1.1~'19.12.31
6	금천	금천구	(사)한국주거복지협회	'14.1.1~'19.12.31
7	영등포	영등포구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14.1.1~'19.12.31
8	관악	관악구	(사)관악주민연대	'14.1.1~'19.12.31

○ 2회 재계약

연번	센터명	사업지역	수탁기관명	위탁기간
9	성동	성동구	서울주택도시공사	'16.8.17~'19.12.31
10	송파	송파구	(사)위례	'16.8.17~'19.12.31

○ 1회 재계약

연번	센터명	사업지역	수탁기관명	위탁기간
11	중구	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18.3.1~'19.12.31
12	종로	종로구	(사)나눔과 미래	'18.3.1~'19.12.31
13	용산	용산구	서울주택도시공사	'18.3.1~'19.12.31
14	광진	광진구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18.3.1~'19.12.31
15	마포	마포구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마포센터)	'18.3.1~'19.12.31
16	강서	강서구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강서센터)	'18.3.1~'19.12.31
17	도봉	강서구	서울주택도시공사	'18.3.1~'19.12.31
18	구로	구로구	(사)구로시민연대	'18.3.1~'19.12.31
19	동작	동작구	(사)주거복지연대	'18.3.1~'19.12.31
20	강남	강남구	(사)해냄복지회	'18.3.1~'19.12.31
21	강동	강동구	서울주택도시공사	'18.3.1~'19.12.31
22	동대문	동대문구	서울주택도시공사	'18.4.1~'19.12.31
23	중랑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18.4.1~'19.12.31
24	양천	양천구	서울주택도시공사	'18.4.1~'19.12.31
25	서초	서초구	서울주택도시공사	'18.4.1~'19.12.31
26	중앙주거	서울시 전역	서울주택도시공사	'18.6.1~'19.12.31

【붙임 3】 2019 주거복지센터 평가 개요 및 방법

- 대 상 : 25개 주거복지센터
- 기 간 : '19.8.2 ~ 8.31
 - ※ 평가대상기간 : '18년 위탁개시일~'19.7.31까지
- 주요내용 :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 위탁사무 전반
- 활용계획
 - 성과 평가결과(60점 기준)재계약 및 재위탁 여부 판단에 반영
 - 센터별 우수사례 공유 전파하고 미흡사례 보완하는 등 운영계획 반영
- 평가절차
 - ┌ 1차 평가 : 자체평가표에 의한 센터별 자체평가
 - └ 2차 평가 : 용역 계약 수행기관에 의한 전문가 현장 평가

〈 평가용역 〉

- ◆ 수행기관 :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 송아영 교수)
- ◆ 과업내용
 - 자체평가 결과 현장방문 용역 수행기관 전문가 확인 및 평가
 - 센터별 평가 보고서 작성 등
- ◆ 평가방법 :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용역 수행기관 확인 및 평가
 - 용역수행기관 책임하에 센터 방문 확인에 의한 평가지표별 배점 평가
- ◆ 소요예산 : 1,650만원

○ 평가항목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투입	사업운영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개별사무	개별사무	지도점검 이행노력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사용자 만족도	사용자 만족도	만족도 재고 노력
사업시설	센터운영의 편리성	가점	① 법인적립금 확보 및 활용여부 (3점) ② 주거복지센터 자체의 특화사업 실시여부 (3점)		
활동	상담 및 사례관리	상담의 충실성	계	106점 (가점 포함)	
		상담 및 사례관리 사후관리			
		사례관리 수행의 전문성			
	조사 및 교육	조사 및 교육의 수행			
	지역사회 관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외부자원(자원) 발굴			
이용자의 권리	홍보 등 서비스 정보 제공				

【붙임 4】 2019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 평가 위원회 심의 결과

연번	위탁사무명	유형		수탁기관	심의결과
14	중앙주거복지센터운영	사무	재계약	서울주택도시공사	적정
15	주거복지센터 운영(성동)	사무	재계약	서울주택도시공사	적정
16	주거복지센터 운영(성북)	사무	재계약	(사)나눔과 미래	적정
17	주거복지센터 운영(강북)	사무	재계약	(사)강북주거복지센터	적정
18	주거복지센터 운영(노원)	사무	재계약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적정
19	주거복지센터 운영(은평)	사무	재계약	(사) 마을과사람	적정
20	주거복지센터 운영(서대문)	사무	재계약	(사) 희망마을	적정
21	주거복지센터 운영(금천)	사무	재계약	(사) 한국주거복지협회	적정
22	주거복지센터 운영(영등포)	사무	재계약	(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적정
23	주거복지센터 운영(관악)	사무	재계약	(사) 관악주민연대	적정
24	주거복지센터 운영(송파)	사무	재계약	(사) 위례	적정
25	주거복지센터 운영(종로)	사무	재계약	(사)나눔과미래	적정
26	주거복지센터 운영(중구)	사무	재계약	서울주택도시공사	적정
27	주거복지센터 운영(용산)	사무	재계약	서울주택도시공사	적정
28	주거복지센터 운영(광진)	사무	재계약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적정
29	주거복지센터 운영(도봉)	사무	재계약	서울주택도시공사	적정
30	주거복지센터 운영(마포)	사무	재계약	(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적정
31	주거복지센터 운영(강서)	사무	재계약	(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적정
32	주거복지센터 운영(구로)	사무	재계약	(사)구로시민센터	적정
33	주거복지센터 운영(동작)	사무	재계약	(사)주거복지연대	적정
34	주거복지센터 운영(강남)	사무	재계약	(사) 해냄복지회	적정
35	주거복지센터 운영(강동)	사무	재계약	서울주택도시공사	적정
36	주거복지센터 운영(동대문)	사무	재계약	서울주택도시공사	적정
37	주거복지센터 운영(중랑)	사무	재계약	서울주택도시공사	적정
38	주거복지센터 운영(양천)	사무	재계약	서울주택도시공사	적정
39	주거복지센터 운영(서초)	사무	재계약	서울주택도시공사	적정